

#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549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10.

발의자 : 박홍근 · 박광온 · 위성곤  
이춘석 · 이종걸 · 설훈  
문미옥 · 정재호 · 안규백  
김현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 · 연구시설 또 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,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 고 있음.

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 ·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 2 신설).

##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기부 등) ① 울산과기원에 토지·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토지·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17조의2(기부 등) ① <u>울산과기</u> <u>원에 토지·연구시설 또는 연구</u> <u>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</u> <u>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</u> <u>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토지·연구시설 또는 연구기</u> <u>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</u> <u>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한다.</u></p>